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6년 10월 2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6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12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6년 11월 3일)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 상 필)

가. 제 안 이 유

-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시 교부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1.11공포, 2006.7.12시행)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임수수료
 -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보조·융자금이며,
-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년월일 : 2006. 10. 2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시 교부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06. 9. 28 ~ 10.18)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2.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
3.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보조·용자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